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 303
----------	-------

제출년월일 : 2013. 4 . 4.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3단계(법률-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4단계(법률-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조례)로 변경에 따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12.10. 2)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안 제6조).

1)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 판매시설, 숙박시설

나.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운영, 정비시범구역 등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안 제7조 내지 제9조).

1)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안전점검 위탁대상 추가 (안 제14조).

1)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지방공기업(안산도시공사) 추가

라. 현수막 지정제시대 등 관리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명시(안 제18조).

1) 수탁자는 영 제2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또는 법 제1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단체 등으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자

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안 제23조).

1)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종사자과정) 이수 시 교육 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개정조례안 : 붙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3. 1. 25 ~ 2013. 2. 14. (20일간)

○ 부서의견(도시계획상임기획단)

- 현수막 지정계시대 등의 수탁대상자에 안산도시공사 추가(안 제18조).
 - 현수막계시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안산도시공사를 추가하여 시설물 운영의 안정성 도모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현행)

○ 시·군·구 조례 개정 표준안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방침 공문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블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산시광고물 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암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 운영)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 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 · 운영되는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영 제32조에 따른 안산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안산시 경관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 또는 벽보지정계시판(이하 “제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시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산도시공사 또는 법 제1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단체 등으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제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의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현수막지정계시대, 벽보지정계시판,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거리미관계장 허진
	담당자 성명·전화	한규석 (행정 2403)

[별표 1]

의 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m^2$ 미만		
-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이하	30만원	
- $3.1m^2$ 이상 $4.0m^2$ 이하	40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5만원	
2) 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 $5.0m^2$ 이상 $6.0m^2$ 이하	55만원	
- $6.1m^2$ 이상 $7.0m^2$ 이하	65만원	
- $7.1m^2$ 이상 $8.0m^2$ 이하	75만원	
- $8.1m^2$ 이상 $9.0m^2$ 이하	85만원	
- $9.1m^2$ 이상 $10.0m^2$ 미만	95만원	
3) 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 $10.0m^2$ 이상 $12.0m^2$ 이하	110만원	
- $12.1m^2$ 이상 $14.0m^2$ 이하	130만원	
- $14.1m^2$ 이상 $16.0m^2$ 이하	145만원	
- $16.1m^2$ 이상 $18.0m^2$ 이하	165만원	
- $18.1m^2$ 이상 $20.0m^2$ 미만	185만원	
4) 면적 $20m^2$ 이상	200만원+면적 $20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2$ 미만		
-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이하	30만원	
- $3.1m^2$ 이상 $4.0m^2$ 이하	40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 $5.0m^2$ 이상 $6.0m^2$ 이하	55만원	
- $6.1m^2$ 이상 $7.0m^2$ 이하	65만원	
- $7.1m^2$ 이상 $8.0m^2$ 이하	75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5만원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 10.0m ² 이상 12.0m ² 이하	110만원
	-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130만원
	-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150만원
	-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170만원
	-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m ²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m ² 미만		
	- 0.5m ² 이하	30만원
	- 0.6m ² 이상 1.0m ² 이하	35만원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40만원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0m ² 이상 3.5m ² 이하	55만원
	- 3.6m ² 이상 4.0m ² 이하	65만원
	- 4.1m ² 이상 4.5m ² 이하	85만원
	- 4.6m ² 이상 5.0m 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110만원
	- 6.1m ² 이상 7.0m ² 이하	130만원
	- 7.1m ² 이상 8.0m ² 이하	150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170만원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m ²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m ² 미만		
- 2.0m ² 이하	30만원	
- 2.1m ² 이상 3.0m ² 이하	35만원	
- 3.1m ² 이상 4.0m ² 이하	40만원	
- 4.1m ² 이상 5.0m 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55만원	
- 6.1m ² 이상 7.0m ² 이하	65만원	
- 7.1m ² 이상 8.0m ² 이하	75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5만원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 10.1m ² 이상 12.0m ² 이하	110만원	
-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130만원	
-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150만원	
-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170만원	
-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m ² 이상 50m ² 미만		
- 20.0m ² 이상 25.0m ² 이하	210만원	
- 21.1m ² 이상 30.0m ² 이하	230만원	
- 30.1m ² 이상 35.0m ² 이하	245만원	
- 35.1m ² 이상 40.0m ² 이하	260만원	
- 40.1m ² 이상 45.0m ² 이하	280만원	
- 45.1m ² 이상 50.0m ²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m ²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 ² 이하	30만원	
- 연면적 6m ² 이상 10m ²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m ² 이상 15m ²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m ² 이상 20m ²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m ² 이상	70만원	+연면적 21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 예보탑		
- 연면적 5m ² 이하	30만원	
- 연면적 6m ² 이상 10m ²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m ² 이상 15m ²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m ² 이상 20m ²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m ² 이상	80만원+연면적 21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계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 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m ²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m ² 이상	150만원+연면적 11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 ² 미만		
- 1.0m ² 이하	10만원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20만원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0m ² 이상 4.0m ² 이하	35만원	
- 4.1m ² 이상 5.0m ²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m ² 이상	50만원+연면적 5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고: 이 행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 행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 행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 행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 행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 행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 행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 행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 행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p>가. 관계 법규(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p>※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p>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p>※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p>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m^2$ 이하	3,000원	
- 면적 $6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m^2$ 이하	30,000원	
- 면적 $6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m^2$ 이하	2,000원	
- 면적 $6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m^2$ 이하	15,000원	
- 연면적 $6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지등(개당)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m^2$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하는 금액

바. 자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m^2$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2$ 이하 3,000원
- 연면적 $1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m^2$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m^2$ 초과시 $1m^2$ 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하. 벽보(1간)	3,000원
거. 전단(1간)	3,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체·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6m^2 이하 - 연면적 6m^2 초과 20m^2 이하 - 연면적 20m^2 초과시 1m^2당 더 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m^2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m^2 이하 - 연면적 3.5m^2 초과 10m^2 이하 - 연면적 10m^2 초과시 1m^2당 더 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m^2 이하 - 연면적 50m^2 초과 70m^2 이하 - 연면적 70m^2 초과시 1m^2당 더 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m^2 이하 - 연면적 10m^2 초과 20m^2 이하 - 연면적 20m^2 초과시 1m^2당 더 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사. 현수막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m^2 이상 40m^2 이하 - 연면적 40m^2 초과시 1m^2당 더 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 제1항 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m ² 미만			
- 0.5m ² 이하		13만원	
- 0.6m ² 이상 0.8m ² 이하		22만원	
- 0.9m ² 이상 1.0m ²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m ² 이상 2m ² 미만			
- 1.0m ² 이상 1.3m ² 이하		42만원	
- 1.4m ² 이상 1.6m ² 이하		50만원	
- 1.7m ² 이상 2.0m ²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m ² 이상 3m ² 미만			
- 2.0m ² 이상 2.3m ² 이하		75만원	
- 2.4m ² 이상 2.6m ² 이하		100만원	
- 2.7m ² 이상 3.0m ²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m ² 이상		130만원+연면적 3m ² 초과하는 면적의 0.5m ²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m ² 미만			
- 0.5m ² 이하		8만원	
- 0.6m ² 이상 0.8m ² 이하		12만원	
- 0.9m ² 이상 1.0m ²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m ² 이상 2m ² 미만			
- 1.0m ² 이상 1.3m ² 이하		25만원	
- 1.4m ² 이상 1.6m ² 이하		33만원	
- 1.7m ² 이상 2.0m ²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m ² 이상 3m ² 미만			
- 2.0m ² 이상 2.3m ² 이하		58만원	

	- 2.4m ² 이상 2.6m ² 이하 - 2.7m ² 이상 3.0m ² 미만	67만원 79만원
라) 연면적 3m ² 이상		80만원+연면적 3m ² 초과하는 면적의 0.5 m ²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m ² 미만	- 1.0m ² 이하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0m ² 이상 3.7m ² 이하 - 3.8m ² 이상 4.4m ² 이하 - 4.5m ² 이상 5.0m ²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 6.1m ² 이상 8.0m ² 이하 - 8.1m ² 이상 10.0m ²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m ² 이상		80만원+연면적 10m ²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 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 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	법 제20조제	

수하지 않은 경우	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① 허	② 허	③ 주	④ 전	⑤ 주	⑥ 주	⑦ 종	⑧ 수	⑨ 규	⑩ 표	⑪ 표	⑫ 표	⑬ 학	⑭ 준	⑮ 상	⑯ 주	⑰ 전	⑱ 번	⑲ 비	⑳ 경	㉑ 전	㉒ 화	㉓ 번	㉔ 시
호	호	민	화	화	화	화	수	규	표	표	표	학	준	상	주	전	번	비	경	화	화	번	시
호	호	민	화	화	화	화	수	규	표	표	표	학	준	상	주	전	번	비	경	화	화	번	시
호	호	민	화	화	화	화	수	규	표	표	표	학	준	상	주	전	번	비	경	화	화	번	시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捺印)

안산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Redacted]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Redacted]
	주소	[Redacted]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Redacted]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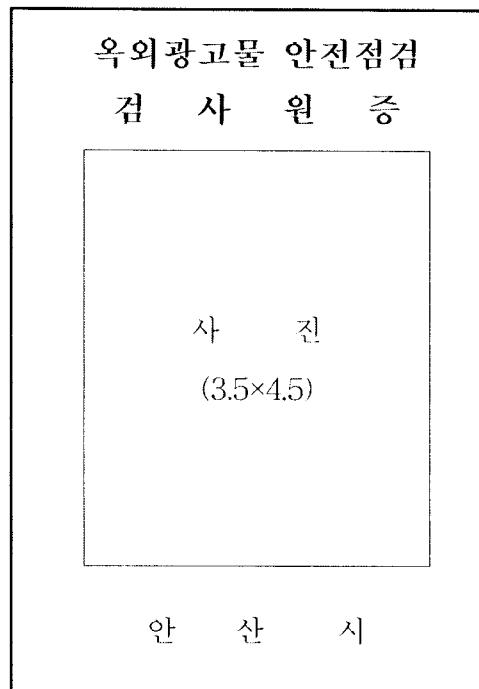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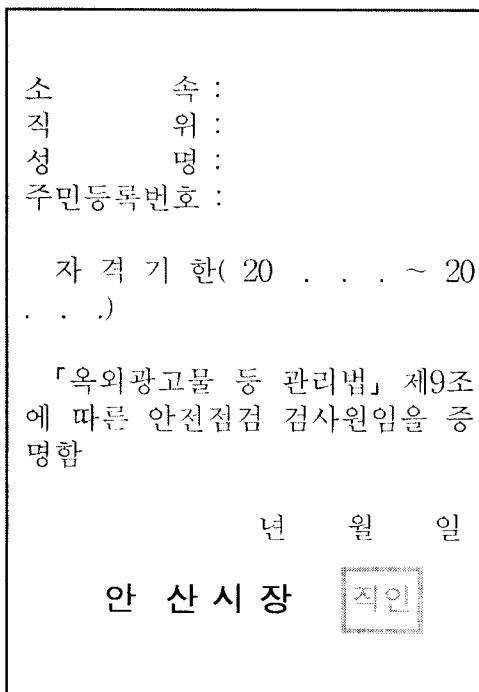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 뒤 쪽 >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업소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input type="checkbox"/> 합격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৩০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설명

(시정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기초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구성자재	변형, 훠,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제사용 여부, 「신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③ 성명	④ 업소명	⑤ 주소	⑥ 광고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⑨ 광고물등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⑯ 비고

364x257mm[보준용지(1종) 70g/m²]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④ 성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⑤ 업 소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명	명	소	류	량	격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	---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성명

수강자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2)	(3)	(4)	(6)			
① 번 호	교 육	교 육	소 속	⑤ 성 명	주민등록	비 고
과정명	수료일자	업소명			번 호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13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일시

교육계획
장소

불참사유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약)

안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신청자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약)

안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탁자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